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0. 20.
행정문화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5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1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0. 10. 14.)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윤영현)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욕구 증가에 맞추어 전용체육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 재활프로그램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된 근대5종 훈련장을 같은 부지에 재건립하며
- 1984년에 건축되어 「정신보건법」이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유와 사회복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기존 병동을 철거하며

- 옥천지역의 의료기기·전자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등 소방수요에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설하는 옥천소방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340-3 일원(밀레니엄타운 부지내)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16,528m²(세부내역은 추후 결정)
 - 건물신축 : 2종 12,293m²
 - 장애인스포츠센터 지하1/지상3층 9,917m²
 - 근대5종훈련장 지하1/지상3층 2,376m²
- 사업기간 : 2011. 1 ~ 2014.12(4년간)
- 사 업 비 : 18,000백만원(광특회계 4,200 도비 13,800)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
- 사업규모
 - 정신병동 증축 : 지하1/지상4층 8,600m²
 - 부대시설 확충 : 주차장 지하2층 4,200m², 폐수처리장 1식 450m²
- 사업기간 : 2011.1 ~ 2013.12(3년간)
- 사 업 비 : 20,500백만원(국비 10,250 도비 10,250)

《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0-9 일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0-9 2,734m²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산 13-8 448m²
 - 건물신축 : 지하1/지상3층 2,970m²
- 사업기간 : 2011. 1 ~ 2012.12(2년간)
- 사 업 비 : 4,561백만원

□ 재산의 처분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
- 철거규모 : 2,223.5m²(정신병동 2,145.5m² 충북폭력방지센터 78m²)
- 철거시기 : 2013. 7월이후(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이후)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장용대)

가.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장애인 스포츠활동 욕구 및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용 체육시설 미확보로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교통여건이 좋은 청주지역(밀레니엄타운 부지내)에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하고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 재활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직동에 위치한 근대5종 훈련장의 노후(안전진단시 D급판정)화로 재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센터 부지에 같이 건립하여 토지매입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장애인의 스포츠활동과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재활프로그램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편의 및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밀레니엄타운 부지내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건립이 확실치 않으며,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본건은 「정신보건법」 시설규격(기준) 미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설개선으로 최적의 치유환경과 사회 복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주의료원 내에 정신병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정신병동은 1984년 정신요양시설로 건축되어 시설낙후로 입원 환자 치료 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며,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설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정신보건법」 시설규격(기준)에도 미달됨에 따라 의료환경개선 및 포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본건은 옥천군의 군세가 확장되고,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대청댐, 금강상류 지역인 옥천군에 각종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기·전자산업단지 및 청산농공단지 조성으로 대형화재 등 소방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또한 현재 공동주택 30개소 4,900세대, 사회복지시설 5개소 814명 등이 분포되어 있어 각종 화재나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관리소방서인 영동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신설 옥천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본건은 영동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옥천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방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안전기반 조성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소방수혜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영동소방서의 신설은 소방서 건물신축과 함께 대응인력의 확보, 소방차 등 자산의 확보 등 인력과 자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본건은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신축된 이후 현재의 정신병동(2,145.51m²)와 충북폭력방지지원센터(78m²)를 2013년 7월 이후 철거하고, 청주의료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본건은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신축될 경우 불용될 현 정신병동과 충북폭력방지지원센터를 철거하고 이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2 건	19,710.0	4,562,000				
	건물	3 건	23,863.0	34,759,000				
	기타	1 건	4,650.0	3,740,000				
1	토지	청주 상당 오동 340-3 밀레니엄타운 부지	16,528.0	4,000,000	2011	장애인스포츠 센터 신축 부지	(재)충북개 발공사	
	건물	"	9,917.0	12,000,000	2011~ 2014	장애인스포츠 센터 건립	신 축	
		"	2,376.0	2,000,000	2011~ 2012	근대5중 훈련장 이전	신 축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 흥덕 사직 554-6	8,600.0	16,760,000	2011~ 2013	청주의료원 정신 병동 시설개선	증 축	
	기타	"	4,200.0	3,200,000	2011~ 2013	청주의료원 주차장 확충	증 축	
		"	450.0	540,000	2011~ 2013	청주의료원폐수 처리장 증설	증 축	
3	토지	옥천 옥천 문정 200-9 등 2필지	3,182.0	562,000	2011	신설 옥천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국 가 (국토해양부)	
	건물	"	2,970.0	3,999,000	2011~ 2012	신설 옥천소방서 청사 신축	신 축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1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처분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청주 흥덕 사직 554-6	2,223.5	1,515,830	2013	청주의료원 구정신병동 철거		
	건물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 흥덕 사직 554-6	2,223.5	1,515,830	2013	청주의료원 구정신병동철거	충청북도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제 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